

의안번호	제99호
의결 연월일	2010년 월 일 (제 296 회)

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2월 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

의안 번호	9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12월 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충청북도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
-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명예도지사의 위촉·해촉 절차 마련(안 제3조)
 - 실·국·단·본부장 또는 시장·군수의 추천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
 - 명예도지사가 사망, 질병, 타 시·도 진출,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 가능
 - 명예도지사를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회 통보
- 명예도지사의 임기 설정(안 제4조)
 -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, 단,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해촉
- 명예도지사의 직무 범위 명시(안 제5조)
 -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,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
 -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연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(안 제6조)
-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(안 제7조)
 - 도민이 아닌 경우 '명예도민' 권리 부여
 - 도정활동시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 가능

○ 명예도지사의 재정적 지원(안 제8조)

- 명예도지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비보상 등 지원 가능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입

6. 비용추계서 : 불 입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위촉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명예도지사(이하 “명예도지사”라 한다)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·국·단·본부장 또는 시장·군수가 추천한 사람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도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
2.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.

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명예도지사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기)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명예도지사의 직무)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
2.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
3.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(예우 및 권리) ① 명예도지사가 도민이 아닐 경우 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에 따른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.

제8조(실비보상) ①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,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특례)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명예도지사의 임기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(이하 "결정"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도에 **도정조정위원회**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□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도 출신으로 충청북도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충청북도 **명예도민증서**(이하 “명예도민증서”라 한다)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2. 5. 31>

제2조(수여대상)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도 인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2. 5. 31>

1. 외국과의 자매결연, 우호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
2. 장학재단 설립운영등 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
3. 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

4. 충청북도 소재 각급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중 도, 시·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
5. 도, 시·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온 자

제3조(대상자추천) ① 수여대상자는 도지사가 추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장, 시장·군수 및 유관기관·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02. 5. 31>

② 추천시기는 연 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.

제4조(대상자결정)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 <개정 2002. 5. 31>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02. 5. 31>

제6조(대우)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.

1. 지역문화행사와 도, 시군정 간담회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
2. 새충북, 도, 시군정보고서, 홍보책자등 각종 도, 시군정소식지 제공
3.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
4. 각종 신문,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

제7조(권리의무)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.

1. 도유 및 시·군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(감면)이용 또는 우선이용
2. 도, 시·군으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
3.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, 시·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

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비용추계서 등

□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 :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위촉 · 운영
2. 비용추계의 전제 : 10명 내외로 위촉
회의수당(1년) 정기회의 1회, 수시회의 회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2011	2012	2013	2014	합계
명예도지사 회의수당	3,000	3,000	3,000	3,000	12,000

4. 부대의견 : 해당사항 없음

□ 재원조달 방안

1. 재원분담계획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2011	2012	2013	2014	합계
지방자치단체 · 일반회계	3,000	3,000	3,000	3,000	12,000

2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: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
3. 부대의견 : 없음
4. 협의사항 : 없음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충청북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신강섭
연 락 처	043) 220 - 2611 E-mail : ks60@korea.kr